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산 업 융 합 촉 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실증특례 사업자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5828호, 2021.6.15. 공포, 2021.9.16. 시행)됨에 따라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임시허가 전환 관련 세부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 및 임시허가 전환 관련 세부절차
(안 제11조의5 신설)

-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 관련 세부절차·양식,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의 임시허가 전환 관련 세부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

나. 임시허가 승인기업에 대한 책임보험 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20조제3항)

-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1. ~ 8.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4제3항”을 “법 제10조의5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5부터 제11조의7까지를 각각 제11조의6부터 제11조의8까지로 하고,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10조의5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법령의 정비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편의의 증대 수준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그 회복 여부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성, 파급효과 및 성장력 등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의 정비 필요여부 및 정비방향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0조의5제5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7항 및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별지 제6호의3 서식의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법 제10조5제3항에 따른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8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법 제10조의5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⑪ 법 제10조의5제7항에서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2.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0조의5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할 수 있는 경우: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다만,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시허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

여야 한다.

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요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등에게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제5항제7호 중 “법 제10조의3제10항 단서”를 “법 제10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8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의2(중전의 제8호) 중 “법 제10조의4제3항”을 “법 제10조의5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법 제10조의5제3항”을 “법 제10조의6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법 제10조의5제8항”을 “법 제10조의6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법 제10조의5제9항”을 “법 제10조의6제9항”으로 한다.

8.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 요청 접수

9.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법 제10조의5제6항에 따

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접수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대상”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정비 요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명칭		
	유형	[] 신제품인 경우 [] 서비스인 경우 [] 신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주요내용		
기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내용	확인번호		유효기간
	규제특례 대상 법령		
	구역		
	기간		
	규모		
	조건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법령정비 요청내용	정비요청 법령(신청인이 정비를 요청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기재)		
	신청인의 의견(법령정비 요청 이유, 제·개정 방향 등을 포함하여 기재)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기관의 장

귀하

붙임서류	1.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한함)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명칭		
	주요내용		
법령정비 요청내용	정비요청 법령		
	신청인의 의견		
법령정비 판단결과		1. 「 . . . 」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하였습니다. ※ 임시허가 전환 신청 대상입니다.	
		2. 「 . . . 」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안내사항	※ 신청인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5 제8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합니다)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임시허가 신청 절차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에 따르며, 임시허가 신청서 외의 서류 제출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4항부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 ⑮ (생략)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 ⑮ (현행과 같음)		
⑯ 법 제10조의3제10항 단서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10조의3제10항 단서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⑱ · ⑲ (생략)

제11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는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⑤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결과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 10조의4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삭 제>

⑱ · ⑲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법 제10조의5제9항-----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 ⑪ (생략)

<신설>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의 연장 등) ① 법 제10조의5제
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
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
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
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

레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10조의5제3항 및 제9항

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10조의5제3항에 따른 법령의 정
비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10조의
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
10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
비 필요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
스에 따른 이용자 편익의 증
대 수준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
스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그
회복 여부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성, 파급효과 및 성장력 등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의 정비 필요여부 및 정비방향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0조의5제5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7항 및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법 제10조5제3항에 따른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8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법 제10조의5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⑪ 법 제10조의5제7항에서 “제4

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2.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0조의5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할 수 있는 경우: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다만,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시허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

	<u>합한다) 및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u> <u>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요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u>
제11조의5 ~ 제11조의7 (생략)	제11조의6 ~ 제11조의8 (현행 제11조의5부터 제11조의7까지와 같음)
제20조(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	제20조(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등에게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④ (생략)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6. (생략)

7. 법 제10조의3제10항 단서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신 설>

8.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접수

9.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10.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⑤ -----

-----.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10조의5제2항-----

8.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 요청 접수

8의2. 법 제10조의5제9항-----
--

9.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법 제10조의5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접수

10. 법 제10조의6제3항-----

통보 및 회신문서 접수 11. <u>법 제10조의5제8항</u>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12. <u>법 제10조의5제9항</u> 단서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 보 13. ~ 15. (생 략) ⑥ · ⑦ (생 략)	----- 11. <u>법 제10조의6제8항</u>----- ----- 12. <u>법 제10조의6제9항</u> ----- ----- ----- -- 13. ~ 15.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연 락 처	(044) 203 - 4528